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4. 5 선고 2021나15947(본소), 2021나15954(반소) 판결 [지체상금
청구 · 공사대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4. 5 선고 2021나15947(본소), 2021나15954(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5435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변론종결 2023. 3. 15.

판결선고 2023. 4. 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54356(본소), 2020가합 60009(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2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견종철, 판사 이형원, 판사 김은경